



의안번호	제 2011 - 11 호
의 결 연 월 일	2011. 5. 2. (제34차 회의)

보
고
안
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목 차

I. 제2기 양형위원회 활동 경과	1
1. 제2기 양형위원회 설립 경과 및 지위	1
2. 제2기 양형위원회 조직 및 구성	1
3. 제2기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4
II. 제3기 양형위원회 구성	20
1. 양형위원회 구성	20
2. 전문위원 구성	20
III. 2011년 운영지원단 업무계획	22
IV. 양형기준 책자 발간 경과 보고	31
1. 개요	31
2. 추진 일정	31
3. 제작 내역	31
4. 수정된 배부 대상기관	31
V.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34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34
2. 서면 질의 및 회신	34
3. 정보공개 청구 및 회신	35

I. 제2기 양형위원회 활동 경과

1. 제2기 양형위원회 설립 경과 및 지위

가. 설립 경과

- 2009. 4. 26. 제1기 양형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고 2009. 4. 27. 제2기 양형위원회가 새롭게 출범
- 2009. 5. 7. 위원장 및 위원들에 대한 위촉·임명장 수여식 거행 후 공식일정 돌입
- 제2기 양형위원회는 제1기 양형위원회의 성과를 토대로 양형자료 조사·분석 및 전문위원 연구 등을 바탕으로 추가 양형기준 설정, 제1기 양형기준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의 적정한 수정, 양형기준 적용현황 점검·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

나. 양형위원회 위상과 지위

-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하는 의결기관
- 대법원 소속의 독립위원회
 - 양형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독립

2. 제2기 양형위원회 조직 및 구성

가. 제2기 양형위원회

- 대법원장이 2009. 5. 7. 제2기 양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13명에게 임명·위촉장을 수여
- 위원은 법관 4인, 검사 2인, 변호사 2인, 법학교수 2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으로 구성

○ 위원회 구성

2011. 4. 기준

지 위	성 명	생년월일	기 수	비 고
위원장	이 규 흥	1944. 12. 15.	사시 8회	변호사
위원 (법관)	구 욱 서	1955. 1. 21.	연수원 8기	서울고등법원장
	성 낙 송	1958. 1. 19.	연수원 1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 민 결	1961. 12. 16.	연수원 17기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임 성 근 (상임위원)	1964. 3. 1.	연수원 17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원 (검사)	차 동 민	1959. 11. 29.	연수원 13기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정 병 두	1961. 11. 13.	연수원 16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위원 (변호사)	조 건 호	1951. 1. 27.	연수원 5기	변호사
	서 석 호	1960. 9. 8.	연수원 14기	변호사
위원 (교수)	하 태 훈	1958. 2. 17.	해당 없음	고려대 법대 교수
	조 국	1965. 4. 6.	”	서울대 법대 교수
위원 (학식경험)	고 대 영	1955. 9. 28.	”	한국방송공사 보도본부장
	이 연 주	1960. 10. 20.	”	한국청년유권자연맹 대표

나. 소위원회

-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의결안건의 검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이하)
- 5인 이내의 양형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지명
- 법관 위원 2인, 검사 위원 1인, 법학교수 위원 2인, 총 5인으로 구성
- 소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명단 】

2011. 4. 기준

지 위	성 명	생년월일	기 수	비 고
소위원장	성 낙 송	1958. 1. 19.	연수원 1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 원	임 성 근 (상임위원)	1964. 3. 1.	연수원 17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 원	정 병 두	1961. 11. 13.	연수원 16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위 원	하 태 훈	1958. 2. 17.	해당 없음	고려대 교수
위 원	조 국	1965. 4. 6.	해당 없음	서울대 교수

다. 전문위원

- 양형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원장이 위촉, 최대 15인까지 둘 수 있음(법원조직법 제81조의9 및 양형위원회 규칙 제8조)
- 전문위원단은 법관 3인, 검사 2인, 변호사 2인, 교수 또는 기타 전문가 4인 등 11인으로 구성
[수석전문위원 1인, 1팀장 : 법관, 2팀장 : 검사]
☞ 임기 1년, 연임 가능, 위원장이 위촉
- 전문위원 구성

【 전문위원 명단 】

2011. 4. 기준

구분	성 명	생년월일	연수원 기수	소 속	직위(직급)	비 고
법원	최 동 렬	1963. 1. 2.	제20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지법 부장판사	수석 전문위원
	홍 준 호	1969. 12. 14.	제23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지법 부장판사	1팀장
	정 준 화	1967. 5. 3.	제28기	법원행정처	판사	2팀
검찰	서 봉 규	1970. 11. 29.	제26기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지청장(부장검사)	2팀장

구분	성명	생년월일	연수원 기수	소속	직위(직급)	비고
	심재철	1969. 3. 6.	제27기	대검찰청	연구관(검사)	1팀
변호사	박영식	1964. 1. 20.	제20기	변호사 박영식 법률사무소	변호사	2팀
	범현	1972. 4. 22.	제30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1팀
교수/ 전문가	강우예	1973. 4. 9.	해당 없음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2팀
	김혜정	1961. 8. 6.	"	영남대학교	부교수	2팀
	이상원	1960. 12. 7.	제21기	서울대학교	부교수	1팀
	조은경	1963. 8. 22.	해당 없음	한림대학교	교수	1팀

라. 운영지원단

- 운영지원단은 양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원조직법 제 81조의9 및 양형위원회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 운영지원단은 고등법원 판사인 운영지원단장과 기획운영과, 자료조사과 및 통계분석과로 구성
- 법원서기관 1명, 법원사무관 9명을 포함한 총 28명(15명의 양형자료 분석관, 통계 전공 실무관 포함)의 일반직원을 배치

3. 제2기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가. 위원회 회의 등 개최

※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17회, 소위원회 회의 8회, 전문위원 전체회의 22회, 전문위원 팀별회의 25회 개최

(1) 양형위원회 전체회의(17회)

차 수	일 시	안 건
18차	2009. 5. 7.	▪ 양형기준 설정 경과보고 등
19차	2009. 7. 20.	▪ 형사실체법 정비방안 검토보고 등
20차	2009. 9. 21.	▪ 제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선정 의결
임시 4차	2009. 10. 26.	▪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양형기준 점검
21차	2009. 11. 16.	▪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양형기준 점검
22차	2009. 12. 21.	▪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양형기준 점검
23차	2010. 2. 8.	▪ 2010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 의결
24차	2010. 3. 22.	▪ 2009년도 연간보고서 발간계획안 의결 ▪ 제1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보고
25차	2010. 5. 24.	▪ 제3차 양형기준안 공청회 개최 계획안 의결 ▪ 제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양형자료조사 결과 보고
26차	2010. 6. 29.	▪ 약취·유인, 절도범죄, 공문서, 식품·보건 양형기준안 의결 ▪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27차	2010. 8. 30.	▪ ‘형량범위내 기준점 설정방안’ 심의
28차	2010. 10. 11.	▪ 개정 형법 시행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방안 심의 ▪ 제3차 공청회 주요 토론 쟁점에 관한 심의
29차	2010. 11. 22.	▪ 제4차 양형기준안 공청회 개최 계획 의결
30차	2010. 12. 21.	▪ 개정 형법 시행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 사기,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마약범죄 양형기준안 의결 ▪ 약취·유인, 절도, 공문서,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31차	2011. 2. 9.	▪ 2011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 의결 ▪ 2010년도 연간보고서 발간계획 의결

차 수	일 시	안 건
32차	2011. 3.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법 개정 등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 의결 ▪ 약취·유인,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 방해, 식품보건, 마약범죄 양형기준 의결
33차	2011. 4.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기 양형위원회 결산(관보게재, 책자발간 등 점검)

(2) 소위원회 회의(8회)

차 수	일 시	안 건
11차	2010. 5.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도, 공문서범죄 양형기준안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12차	2010. 6.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도, 공문서범죄 양형기준안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13차	2010. 6.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취·유인,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안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14차	2010. 6.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문서, 절도, 약취·유인,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안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15차	2010. 1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형법 시행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 제3차 공청회 양형기준안 수정 심의 ▪ 제4차 공청회 양형기준안 수정 심의
16차	2010. 12.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형법 시행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 제3차 공청회 양형기준안 수정 심의 ▪ 제4차 공청회 양형기준안 수정 심의
17차	2010. 12.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형법 시행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 제3차 공청회 양형기준안 수정 심의 ▪ 제4차 공청회 양형기준안 수정 심의
18차	2011. 3.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공청회 주요 의견 검토 ▪ 관계기관 의견 조회 회신의 주요 내용에 관한 검토 ▪ 제2기 양형기준안 및 양형기준 수정안 종합적 검토

(3) 전문위원 회의

(가) 전체 회의(22회)

차 수	일 시	안 건
18차	2009. 7.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상관관계 ▪ 형사실체법 정비방안
19차	2009. 9.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분장
20차	2009. 1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분장 ▪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점검 ▪ 위원회 운영 개선 검토
21차	2009. 12.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점검
22차	2010. 1.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점검 ▪ 2010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
23차	2010. 3.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양형기준 공청회 대상범죄군 선정 ▪ 전문위원 연구과제 추진계획 검토
24차	2010. 5.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양형기준 공청회 대상범죄(약취·유인, 절도, 공문서, 식품·보건)의 양형기준초안 검토 ▪ 법률 개정에 따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25차	2010. 6.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문서범죄 양형기준초안의 쟁점별 검토
26차	2010. 6.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범죄 양형기준초안의 쟁점별 검토 ▪ 절도범죄 양형기준초안의 쟁점별 검토
27차	2010. 6.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초안의 쟁점별 검토 ▪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초안의 쟁점별 검토
28차	2010. 8.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양형기준안 공청회의 주요 토론 쟁점에 관한 논의 ▪ 형량범위 내 기준점 설정방안에 관한 논의
29차	2010. 10.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형법 시행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방안 검토 ▪ 제3차 공청회 제기 쟁점사항에 관한 범죄군별 검토(집행유예기준안 포함)

차 수	일 시	안 건
30차	2010. 10.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공청회 주요 쟁점별 의견 정리 ▪ 제4차 공청회 대상범죄의 양형기준초안 검토
31차	2010. 11.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형법 시행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방안 검토 ▪ 제4차 공청회 대상범죄(사기, 사문서, 공무집행 방해)의 양형기준초안 검토
32차	2010. 11.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유예기준 개선방안 검토 ▪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초안 검토
33차	2010. 11.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형법 시행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 제4차 공청회 대상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34차	2010. 12.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초안 검토 ▪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초안 검토 ▪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양형기준초안 검토 ▪ 사문서범죄의 양형기준초안 검토
35차	2010. 12.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초안 검토 ▪ 집행유예기준의 개선방안 검토 ▪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초안 및 집행유예기준안 검토 ▪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양형기준초안 및 집행유예기준안 검토 ▪ 개정 형법 시행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36차	2011. 1.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 작성 ▪ 제4차 공청회 제기 쟁점에 관한 검토
37차	2011. 2.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 의견조회 회신의 주요 내용에 관한 검토 ▪ 제2기 양형기준안 및 양형기준 수정안 종합적 검토
38차	2011. 3.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 의견조회 회신의 주요 내용에 관한 검토 ▪ 제2기 양형기준안 및 양형기준 수정안 종합적 검토
39차	2011. 3.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기 양형기준안 미합의 쟁점에 관한 검토

(나) 팀별회의

1) 제1팀(12회)

차 수	일 시	안 건
23차	2009. 6.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위원 연구과제 수행 방안
24차	2009. 9.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선정
25차	2009. 10.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분장 ▪ 전문위원 워크숍 논의사항 검토
26차	2009. 1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점검
27차	2010. 1.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점검 ▪ 2010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
28차	2010. 4.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공청회 대상범죄(공문서, 식품·보건)의 양형기준안 작성방안
29차	2010. 4.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공청회 대상범죄(공문서, 식품·보건)의 양형기준안 작성방안
30차	2010. 5.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공청회 대상범죄(공문서, 식품·보건)의 양형기준안 작성방안 ▪ 법률 개정에 따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31차	2010. 9.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형법 시행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방안 검토 ▪ 제3차 공청회 대상범죄(공문서, 식품·보건범죄)의 양형기준안 관련 공청회 제기 쟁점에 관한 검토
32차	2010. 9.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형법 시행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방안 검토 ▪ 사기, 사문서범죄 양형기준안 설정 방안 검토

차 수	일 시	안 건
33차	2010. 1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기, 사문서범죄 양형기준초안에 관한 검토
34차	2010. 1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문서, 식품·보건범죄의 집행유예기준안 검토 사기, 사문서범죄 양형기준초안에 관한 검토

2) 제2팀(13회)

차 수	일 시	안 건
15차	2009. 6.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위원 연구과제 수행 방안
16차	2009. 9.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선정
17차	2009. 10.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분장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점검 위원회 운영 개선 검토
18차	2009. 1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점검
19차	2010. 3.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차 양형기준 공청회 대상범죄군 선정 전문위원 연구과제 추진계획 검토
20차	2010. 4.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차 공청회 대상범죄(약취·유인, 절도)의 양형기준안 작성방안
21차	2010. 5.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차 공청회 대상범죄(약취·유인, 절도)의 양형기준안 검토
22차	2010. 6.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초안의 쟁점별 검토
23차	2010. 9.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취·유인, 절도범죄에 관한 공청회 주요 토론사항 검토
24차	2010. 9.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절도범죄에 관한 공청회 주요 토론사항 검토 약취·유인, 절도범죄의 집행유예기준안 검토

차 수	일 시	안 건
25차	2010. 9.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차 공청회 대상 범죄(공무집행방해,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초안 검토
26차	2010. 10.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정 형법 시행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방안에 관한 검토 마약범죄 양형기준초안에 관한 검토
27차	2010. 11.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정 형법 시행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방안에 관한 검토 마약범죄 양형기준초안에 관한 검토

(4) 공청회

- 양형기준안 제3차 공청회(2010. 8. 12.)
 - 약취·유인, 절도, 공문서,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안
- 양형기준안 제4차 공청회(2011. 1. 20.)
 - 개정 형법 시행 등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 사기,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마약범죄 양형기준안

나. 양형기준의 설정 및 변경

(1) 제2기 양형기준 설정

(가) 양형기준 설정 절차

단 계	담당	내 용
1	양형기준 초안 작성	전문위원
		전문위원단은 양형기준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		
2	양형기준안 의결	위원회 소위원회
		위원회는 양형기준 초안을 심의하여 양형기준안을 마련
↓		

3	공청회	위원회	위원회는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
↓			
4	양형기준안 수정	위원회 소위원회	위원회는 공청회 결과를 반영하여 양형기준안을 수정
↓			
5	의견조회	위원회	위원회는 국회와 관계 국가기관 등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조회
↓			
6	양형기준안 수정	위원회 소위원회	위원회는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양형기준안을 수정
↓			
7	양형기준 확정 및 공개	위원회	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이 최종 의결되면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

(나) 양형기준 설정 경과

- 위원회 제20차 회의(2009. 9. 21.)에서 제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를 의결함으로써 제1기 7개 범죄군에 관한 양형기준에 이어 본격적인 추가 범죄군에 관한 양형기준 설정에 착수
- 추진 경과
 - 제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 결정
 - 약취·유인,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보건, 마약범죄
 - 전문위원 과제 분장
 - 1팀 : 사기, 공문서, 사문서, 식품·보건 범죄군
 - 2팀 : 약취·유인, 절도, 공무집행방해, 마약 범죄군
 - 약취·유인, 절도, 공문서,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안 의결(2010. 6. 29.)

- 제3차 양형기준안 공청회 개최(2010. 8. 12.)
- 사기,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마약범죄 양형기준안 의결(2010. 12. 21.)
- 제4차 양형기준안 공청회 개최(2011. 1. 20.)
-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수렴(2010. 12. ~ 2011. 2.)
- 약취·유인,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보건, 마약범죄 양형기준 의결(2011. 3. 21.)
- 제2기 양형기준은 관보 게재(2011. 4. 15.) 후 2011. 7. 1. 시행
- 제2기 양형기준 설정 효과
- 제2기 양형기준 대상범죄는 전체 구공판사건 중 약 34%에 해당함
- 제1, 2기 양형기준 대상범죄군의 실질적 비중

제1, 2기 양형기준 대상범죄군의 실질적 비중(피고인 수 기준)
☞ 2006. ~ 2008. 전체 구공판사건 중 비율 43.23%
☞ 2008. 1심 합의부 자유형 선고사건 중 비율 67.2%

- 양형기준 시행 후 1년 6월간 권고 형량범위 내 선고 사건 비율 90.7%[☞ 미국 연방의 형량범위 내 선고 사건 비율 56.8%(2009년)]
- 성범죄의 양형 엄정화 : 거의 모든 유형에서 평균 형량 상승

(2) 제2기 양형기준의 주요 내용

(가) 약취·유인범죄

- 법정형 및 국민적 관심이 높은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관련 범죄를 중심으로 유형 분류 후 국민의 법감정을 충실히 반영하여 규범적으로 형량범위 조정 실시

- 약취·유인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약취·유인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기준 설정

(나) 사기범죄

- 전체 사건 중 사건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사기범죄(전체사건 중 17.63%를 차지하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 ‘조직적 사기’를 ‘일반 사기’와 별도로 분류하여 보다 엄정한 형량 범위 설정
 - 전화금융사기, 보험사기단의 보험사기, 기획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의 다단계 사기 등 다수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중대 사기범을 ‘조직적 사기’로 분류하여 일반 사기보다 엄정한 형량 범위 설정

(다)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상습·누범절도’로 분류한 뒤, 각 행위 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시 유형 분류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는 절도의 행위 태양 및 위험성 등을 기준으로 방치물등 절도(제1유형), 일반절도(제2유형), 대인절도(제3유형), 침입절도(제4유형)로 분류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는 각종의 문화재, 송유관 내 기름절도 등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재산에 대한 절도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여 중히 처벌하는 것으로, 다시 그 가치의 경중에 따라 제1, 2 유형으로 분류
- 상습·누범 절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 상습범 등을 별도 유형으로 분류

(라) 공문서범죄

- 문서의 작성 주체와 행위 대상인 문서의 특징을 기준으로, 공문서 위

조·변조 등의 경우와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등의 경우, 공문서등 부정행사의 경우로 유형분류

(마) 사문서범죄

- 문서의 작성 주체와 행위 대상인 문서의 특징을 기준으로, 사문서 위조·변조 등의 경우와 허위진단서 작성 등의 경우로 유형 분류

(바) 공무집행방해범죄

- 범행의 객체와 결과를 기준으로 대인형 공무집행방해, 대물형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로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유형 분류

(사) 식품·보건범죄

- 다종, 다양한 식품·보건 범죄군을 ‘허위표시 유형’,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유형’, ‘부정의료행위’로 분류
- 위 유형들은 다시 행위의 규모(허위표시 유형), 유해의 정도 및 결과(유해식품 등 유형), 영업적인지의 여부(부정의료행위)를 기준으로 세분됨
- 엄정한 형량범위 제시
 - 식품·보건범죄의 중대성을 고려, 비록 발생사례가 쉽사리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여 규범적으로 형량범위를 제시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나 유아, 어린이용 식품 등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두어 가중 영역에 해당하게 함

(아) 마약범죄

- 행위태양과 마약류 가액의 고액 여부를 기준으로 유형 분류
- 마약류의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투약·단순소지, 매매·알선, 수출입·제조로 구분하고, 마약류 가격이 고액인 경우는 별도로 유형분류 후 중한 형량 범위 설정
- 마약범죄 및 수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수사협조를 ‘중요한 수사협

조'와 '일반적 수사협조'로 구별하여 전자를 '특별감경인자'로, 후자를 '일반감경인자'로 반영

- '중요한 수사협조'란 피고인이 자신보다 더 무거운 범죄 유형이나 범죄행위 단계, 마약류의 양 등에 있어 죄질이 더 무겁거나 다수인의 범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

(3)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 위원회는 제4차 임시회의(2009. 10. 26.)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보완 사항을 검토하기로 결정

○ 추진 경과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2010. 2. 8.)
 - 주취 상태의 감경요소 반영 제한,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의 특별가중인자 추가
 - 의견조회 실시(2010. 3. 2. ~ 2010. 4. 2.) - 국회 등 16개 기관 회신
-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개정 법률 공포(2010. 4. 15.)
-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2010. 6. 29.) 및 시행(2010. 7. 15.)

○ 주요 내용

- 권고형량범위의 상향 조정
 - 강간죄, 강제추행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권고형량범위를 상향 조정
 - 13세 미만 대상 강간 상해/치상의 가중영역 형량범위에 무기징역형 선택 가능
- 양형인자표 수정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명정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 음주 경위 및 심신미약 여부에 따라 감경인자 반영 제한 또는 일반가중인자 반영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을 일반감경인자에서 삭제

• 특별가중인자 추가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행위'와 선택적 규정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소아기호증에 의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에서 삭제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특별가중인자를 추가함으로써 종전에 비하여 많은 사건에서 가중영역의 권고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함

(4) 형법 개정 등에 따른 제1기 양형기준 수정

○ 위원회 제28차 회의(2010. 10. 11.)에서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대폭 상향한 개정 형법 시행(2010. 10. 16.)에 따라 제1기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결정

○ 추진 경과

- 형법 개정 등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2010. 12. 21.)

• 제4차 양형기준안 공청회 개최(2011. 1. 20.)

•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수렴(2010. 12. ~ 2011. 2.)

- 형법 개정 등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 의결(2011. 3. 21.)

- 수정 양형기준은 관보 게재 즉시 시행(2011. 4. 15.)

○ 주요 내용

- 살인범죄를 동기를 기준으로 3개 유형으로 분류하던 것을 '중대범죄 결합 살인'(예컨대, 강간살인 등)을 제4유형으로,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을 제5유형으로 재분류하여 권고형량 대폭 상향 조정

♣ 종전 양형기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제1유형	3년 - 5년	4년 - 6년	5년 - 7년
제2유형	6년 - 9년	8년 - 11년	10년 - 13년
제3유형	8년 - 11년	10년 - 13년	12년 - 15년, 무기 이상

♣ 수정된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참작 동기 살인	3년 - 5년	4년 - 6년	5년 - 8년
2	보통 동기 살인	6년 - 10년	9년 - 13년	12년 - 17년
3	비난 동기 살인	9년 - 13년	12년 - 16년	15년 이상, 무기 이상
4	중대범죄 결합 살인	14년 - 18년	17년 - 22년	20년 이상, 무기 이상
5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18년 - 23년	22년 - 27년	25년 이상, 무기 이상

- 13세 미만 대상 강간상해, 강간치사/강제추행치사범죄의 가중영역의 유기징역 상한을 삭제
- 강도치사 권고 형량범위 대폭 상향 조정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감경	기본	가중	감경	기본	가중
강도치사	6년 - 9년	8년 - 11년	10년 - 15년	6년 - 11년	9년 - 13년	11년 이상, 무기

- 살인미수범죄 형량범위 상향 조정(기수범 형량범위의 1/2 또는 1/3 ⇒ 기수범 형량범위의 상한을 2/3로, 하한을 1/3으로 각 감경)

(5) 제1기 양형기준 운영점검결과 분석

○ 추진배경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은 판결서에 기재된 양형의 이유를 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의 적용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 양형기준이 설정된 제1기 양형기준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전수조사 실시

○ 추진경과

- 2011. 1. ~ 2011. 2. : 제1기 양형기준 대상 범죄군에 관하여
2010. 12. 31.까지 선고된 사건의 판결
문 조사결과 입력
- 2011. 2. 말 : 통계시스템(SPSS)에 의하여 통계분석 실시
- 2011. 3. 21. : 운영점검 보고서 작성 완료, 제32차 위원회 보고

II. 제3기 양형위원회 구성

1. 양형위원회 구성

2011. 5. 2. 현재

지 위	성 명	생 년 월 일	기 수	비 고
위원장	이 기 수	1942. 12. 30.	해당 없음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
위원 (법관)	구 욱 서	1955. 1. 21.	연수원 8기	서울고등법원장
	임 중 현	1959. 3. 19.	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 기 정	1962. 11. 14.	연수원 16기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임 성 근 (상임위원)	1964. 3. 1.	연수원 17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원 (검사)	차 동 민	1959. 11. 29.	연수원 13기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정 병 두	1961. 11. 13.	연수원 16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위원 (변호사)	이 태 섭	1963. 7. 1.	연수원 16기	대한변협 법제이사
	이 광 수	1961. 12. 31.	연수원 17기	변호사
위원 (교수)	하 태 훈	1958. 2. 17.	해당 없음	고려대 법대 교수
	이 상 원	1960. 12. 7.	”	서울대 법대 교수
위원 (학식·경험)	최 금 락	1958. 5. 14.	”	SBS 방송지원본부장
	이 연 주	1960. 10. 20.	”	한국청년유권자연맹 대표

2. 전문위원 구성

2011. 5. 2. 현재

구분	성 명	생년월일	연수원 기수	소 속	직위(직급)	비 고
법원	최 동 렬	1963. 1. 2.	제20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지법 부장판사	수석 전문위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연수원 기수	소속	직위(직급)	비고
	홍준호	1969. 12. 14.	23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지법 부장판사	1팀장
	정준화	1967. 5. 3.	28기	법원행정처	판사	2팀
검찰	서봉규 (사임)	1970. 11. 29.	26기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지청장(부장검사)	2팀장, 후임자 위촉 예정
	심재철	1969. 3. 6.	27기	대검찰청	연구관(검사)	1팀
변호사	박영식	1964. 1. 20.	20기	변호사 박영식 법률사무소	변호사	2팀
	범현	1972. 4. 22.	30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1팀
교수/ 전문가	강우예	1973. 4. 9.	해당 없음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2팀
	김혜정	1961. 8. 6.	"	영남대학교	부교수	2팀
	이상원 (사임)	1960. 12. 7.	21기	서울대학교	부교수	1팀, 후임자 위촉 예정
	조은경	1963. 8. 22.	해당 없음	한림대학교	교수	1팀

Ⅲ. 2011년 운영지원단 업무계획

▶ 기획운영과

순번	구분	내용
1	3기 양형위원회 출범 지원 (11-기획-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 4. 26. 제2기 양형위원회 임기만료 - 2011. 4. 27. 제3기 양형위원회 출범 ○ 구체적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기 양형위원회 활동 경과 보고 - 차질 없는 인수·인계 준비를 통한 위원회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 - 위원회의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 재정비 - 2011년도 양형위원회의 정기회의 일정 수립 및 예상 회의 안건 정리
2	양형기준안 및 양형기준 의견수렴 업무지원 (11-기획-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수렴을 통한 양형기준 설정 절차의 객관화·투명화 구현 - 양형기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 확보 ○ 구체적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기준 설정·변경(양형기준안 및 양형기준)에 관한 공청회 개최 및 법원·관계 국가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단체·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수렴 업무지원 - 양형위원회·소위원회 주최 토론회, 간담회 등 준비 - 양형기준(안) 및 양형제도에 관한 전국 변호사회, 법관 등 지역별 간담회 준비(연 2회) - 현행 양형제도 및 양형기준 시행 이후 일반인·전문가 등의 양형에 대한 인식변화 여부 등에 관한 설문조사 준비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 등을 통한 여론수렴

순번	구 분	내 용
3	양형기준 및 양형기준안 공개 업무지원 (11-기획-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기 양형기준(수정 양형기준 포함) 및 제3기 양형기준안·설명자료 등 양형기준 관련 자료의 공개를 통한 대국민 인식 확대 및 양형기준 홍보(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운영규정 제18조) ○ 구체적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기 양형기준의 양형위원회 의결 후 1개월 내 관보 게재 - 제2기 양형기준 및 제3기 양형기준안·설명자료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 게시 - 제2기 양형기준 책자 발간 및 제3기 양형기준안 자료집 발간 - 제2기 양형기준 책자 국회 보고 및 법원·관계 국가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단체·언론기관 등 관계기관 배부
4	전문위원 업무지원 (11-기획-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위원 연구 활동의 전문성·연속성·효율성·객관성을 고려한 조직 정비 - 양형기준 설정·변경 등에 관한 위원회 업무 지원 및 전문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위원의 위촉 - 전문위원단의 각종 회의 및 연구 지원 ○ 구체적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만료·사임에 따른 전문위원 추천 의뢰 및 신규 위촉 - 전문위원 워크숍 및 전문위원 회의 개최에 따른 회의자료 발간 등 지원 - 양형기준 적용현황 등 양형기준 설정·변경을 위한 각종 통계업무 지원 및 양형자료조사·분석 연구자료 발간 지원 - 특정연구주제에 관한 연구용역 등 의뢰
5	2010 연간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순번	구분	내용
	발간 및 국회보고 (11-기획-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그 연도의 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보고서 발간 및 국회보고(법원조직법 제81조의10) ○ 구체적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에 관한 위원회 의결 - 2010년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실적 정리 및 향후 양형위원회 활동계획안 작성 - 연간보고서 작성 및 발간 - 연간보고서 국회 보고 및 법원·관계 국가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단체·언론기관 등 관계기관 배부
6	양형위원회 및 양형기준 홍보 (11-기획-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위원회의 구체적 활동 내역 및 양형기준제의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에 대한 국민적 이해 증진 - 양형기준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도 제고 ○ 구체적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위원회 활동에 대한 정기적 국회 보고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 개선 작업 - 소식지, 자료집 발간 등을 통한 양형위원회 구체적 활동 내용의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한 양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팸플릿 제작, 라디오 방송, 신문·지하철 광고 등 검토 - 국외 홍보를 위한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및 양형기준 영문화 작업 추진 검토 - 양형기준 책자 발간
7	양형위원회 백서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순번	구 분	내 용
	(11-기획-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위원회 활동 및 성과의 공개를 통한 양형기준 설정 방향 정립 및 양형위원회의 대국민 홍보에 활용 ○ 구체적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기·제2기 양형위원회 연구결과 등을 수록한 백서 발간 검토 - 양형기준 설정·변경 추진 과정, 우리나라 양형현황, 양형자료조사 및 분석 결과,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수록
8	자문위원 위촉 및 간담회 등 개최 검토 (11-기획-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기준 설정·변경, 양형정책 등 양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자문위원 위촉 - 위원회, 소위원회 주최 자문위원과의 간담회 개최 ○ 구체적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위원 위촉 및 간담회 계획 수립 - 자문위원 추천 의뢰 및 후보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조계, 학계, 언론계, 교육계, 노동계,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직역 및 전공자 위촉 - 자문위원 선정안 위원회 보고 - 50인 이내의 자문위원 위촉 및 간담회 개최 검토
9	외국 양형위원회와 의 교류 (11-기획-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양형위원회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통한 양형기준의 설정 및 운영과 관련된 외국 양형위원회의 경험 습득 - 우리나라 양형기준의 대외 홍보 ○ 구체적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기준안 공청회 등에 외국 양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초청 방안 검토 - 외국 양형위원회 위원장·위원 초빙 심포지엄, 토론회, 간담

순번	구분	내용
		<p>회 등 개최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양형기준 관련 자료 수집 - 양형위원장·양형위원, 전문위원 등의 외국 양형위원회 공식 방문 검토 - 지속적 외국 양형위원회 방문 등을 통한 교류·협력 관계 구축 방안 검토
10	<p>양형위원회 각종 자료집 발간 (11-기획-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위원회·소위원회·전문위원·자문위원·운영지원단의 회의, 세미나,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한 연구자료 수집 및 발간 ○ 구체적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위원회·전문위원·자문위원 등 각종 회의 개최에 따른 자료집 발간·등록

▶ 자료조사과

순번	구분	내용
1	양형자료조사 (11-자료-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기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 제1기 양형기준 수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 제2기 양형기준 수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 구체적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기 양형기준 설정 예상범죄를 중심으로 미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실시 - 필요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또는 설정이 예상되는 범죄를 대상으로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실시 - 양형자료조사자에 대한 업무지원 및 점검
2	양형조사표 개선 (11-자료-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조사표의 수정, 개선을 통한 양형자료조사의 신뢰도 제고 ○ 구체적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자료조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양형조사표를 수정·보완 - 양형자료분석업무시스템을 통해 양형조사표 수정 내용을 시스템에 반영함으로써 양형인자의 체계적 사후 관리체제 구축
3	양형자료 분석관 교육 (11-자료-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 1. 양형자료 분석관의 교체로 인한 교육의 필요성 -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함양 ○ 구체적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자료 분석관의 구체적 업무에 대한 교육 실시 - 양형인자의 확인과 평가 등 양형실무 이론 교육 - 범죄유형별 기록검토를 통한 조사표 작성 후 토의 - 교육과 함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을 함으로써 수행할 업무에 대한 이해 및 수행 능력 증진

순번	구 분	내 용
4	양형자료 분석관업무 개선 (11-자료-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자료 분석관 제도의 운영 개선 - 자료조사업무 중심에서 운영점검업무 중심으로 변환 ○ 구체적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자료 분석관 실무편람 발간 - 전국 양형자료 분석관 토론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자료 분석관의 의견 수렴 및 정보 공유 • 연 6회 토론회 개최 - 양형자료 분석관 커뮤니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자료 분석관의 질의·답변, 의견 수렴 및 정보 공유 - 운영점검업무에 관한 실무편람 보완
5	양형기준 운영 점검 (11-자료-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기준 설정·시행 이후 각급 법원의 양형기준 운영점검 및 적용현황 확인 - 양형기준 수정 및 양형정책 수립에 적극적 반영 ○ 구체적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지원단 및 각급 법원 양형자료분석관 등을 통한 효율적 양형기준 운영점검 시스템 구축 - 제1기 및 제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사건의 전수조사를 통한 운영점검 실시 - 제1기 및 제2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정기적 보고 및 책자 발간

▶ 통계분석과

순번	구분	내용
1	양형자료 통계분석 (11-통계-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기 양형기준 설정에 대한 통계분석 -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에 대한 양형자료 사건리스트 및 표본추출 ○ 구체적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예상범죄의 양형조사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에 대한 통계분석 - 확정사건 조사대상 범죄유형별 구분에 따른 양형 통계분석 - 통계적 방법을 활용한 양형기준 설정대상 사건의 모집단 및 표본추출 - SPSS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차원 높은 통계분석 시행 (상관분석, 분산분석, 다중 회귀분석, 로짓회귀분석 등)
2	전문위원 분석 지원 (11-통계-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양형기준안 작성에 필요한 통계분석 지원을 통해 전문위원단의 연구 활동 지원 ○ 구체적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된 양형자료에 대한 다양한 사회과학적 통계분석 방법을 활용한 양형 통계자료 제공 - SPSS 통계분석 프로그램 추가도입을 통한 전문위원 양형기준안 작성에 필요한 통계분석 업무지원 - 양형기준안 작성에 필요한 통계분석 및 기타 통계자료 제공 - 전문위원 양형기준 연구에 필요한 사건리스트 및 판결문 제공
3	양형기준 운영점검 통계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의 운영점검에 대한 통계분석

순번	구분	내용
	(11-통계-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방안 - 제1기 및 제2기 양형기준 대상범죄 해당 사건에 대한 운영 점검 결과에 대한 자료정리 및 통계분석 자료제공 - 양형기준 대상범죄의 사건에 대한 리스트 추출 및 판결문 출력 - SPSS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차원 높은 통계분석 시행 (상관분석, 분산분석, 다중 회귀분석, 로짓회귀분석 등)
4	양형자료 분석업무 개선 (11-통계-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 양형자료분석업무시스템을 활용한 양형자료의 효율적 추출 및 통계 제공 - 양형자료 조사 및 양형기준 운영점검의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 및 모집단의 표본추출에 대한 양형통계분석 실무편람 마련 ○ 구체적 방안 - 분석업무시스템에 입력된 양형자료의 신속한 취합 및 추출을 통해 신뢰도 높은 통계자료 수집 - 분석업무시스템에 포함된 양형자료에 대한 통계분석 기능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식의 통계분석을 적시 처리 - 양형기준 조사 및 분석을 위한 통계관련 내용에 대한 실무편람 마련

IV. 양형기준 책자 발간 경과 보고

1. 개요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및 양형위원회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양형기준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 2011. 3. 21. 『형법 개정 등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 과 『약취·유인,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보건, 마약범죄 양형기준』 이 의결됨에 따라 수정 양형기준 및 제2기 양형기준을 책자의 발간을 통해 공개할 예정
- 2011. 4. 18. 제33차 회의에서 양형기준 책자 발간 경과 보고를 하였으나 동 회의에서 모든 법관 및 검사들에게 각 1부씩 배부될 수 있도록 배부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한 양형기준 책자 배포 방식을 수립하여 보고

2. 추진 일정

- 견본 제작 : 2011. 5. 11.
- 교정 작업 및 인쇄 의뢰 : 2011. 5. 16.
- 각종 배부처 배부 및 국회 보고 : 2011. 5. 25.

3. 제작 내역

- 발간 부수 : 8,000부(종전 3,200부에서 4,800부 증대)
- 책자 규격 및 분량
 - 16절(1도 인쇄)
 - 330쪽

4. 수정된 배부 대상기관

- 배부처

- 기관별 배포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배부
- 종전 배부처에 더하여 일반 법관 및 검사에게도 배부될 수 있도록 법원용, 검찰용 배부 부수를 늘림(법원 2,800부, 검찰 2,000부)

○ 배부 예정표

- 수정된 구체적 배부 대상기관은 아래 배부 예정표와 같음

【양형기준 책자 배부 예정표】

배부처 \ 구분	수 량	비 고
국 회	323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에 배송 국회 요구에 따라 수량 변동가능성 있음
법 원	3,202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고등(특허)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	14	
행 정 부	1,174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법제처,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가기록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5	
감 사 원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검 찰 청	2,191	
지방자치단체	32	16개 광역자치단체×2부
유관기관	143	대한변협,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학회 등	29	한국법학교수회, 한국교정학회, 한국범죄방지재단, 한국법학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피해자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학회
시민단체 등	42	경제개혁연대, 경실련, 한국YWCA연합회, 민변,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전경련, 참여연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여성 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언론기관	128	법조출입 30개 언론사

도서관	대학도서관	112	56개 주요대학도서관 각 2부
	공공도서관	45	국립중앙도서관 5부 전국 주요 공공도서관 20개소 각 2부
전국대학교수(형사법전공)		223	
양형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49	전직 위원 및 전문위원 포함
	운영지원단	278	보존용 및 예비용
총 계		8,000	

V.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 의견 보고

○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국민 참여 공간인 '양형위원회에 바란다'(<http://sc.scourt.go.kr>)에 접수된 의견 보고

○ 접수 의견

순번	접수일자	의견요지
1	2011. 3. 21.	○ 일반사기죄의 형량이 너무 관대하다는 의견 개선
2	2011. 3. 29.	○ 국가보안법 실행의 형량이 상향되어야 한다는 의견 개선
3	2011. 3. 30.	○ 국가보안법 양형기준 설정을 원한다는 의견 개선
4	2011. 3. 30	○ 국가보안법 실행의 형량이 상향되어야 한다는 의견 개선
5	2011. 3. 31.	○ 국가보안법의 실행 형량을 현실화 하여 달라라는 의견 개선

○ 처리결과

-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람후 종결 처리

2. 서면 질의 및 회신

○ 서면질의

순번	접수일자	질의요지
1	2011. 3. 29.	○ 제2기 양형기준 송부요청

2	2011. 4. 1.	○ 제2기 양형기준 송부요청
---	-------------	-----------------

○ 회신결과

- 제2기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 제32차 전체회의에서 수정의결되어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양형기준 설정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함을 회신

3. 정보공개 청구 및 회신

○ 정보공개 청구

순번	접수일자	공개청구 요지
1	2011. 3. 24.	○ 절도, 사기 등 8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 1부
2	2011. 3. 25.	○ '2009 제1차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간행물 1부
3	2011. 3. 29.	○ 살인, 사기, 절도 양형기준 1부
4	2011. 4. 1.	○ 양형기준(황령·배임 포함) 수정안 ○ 신설 양형기준안 ○ 제2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집 1부 ○ 유형별 사건관리 모델집 1부

○ 회신결과

- 양형위원회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제2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집, 유형별 사건관리 모델집 공개요청에 대하여는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아님을 회신

- ‘2009 제1차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간행물 공개요청에 대하여는 ‘2009 제1차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은 양형기준 설정 업무에 내부적으로 참고할 통계자료로서, 아직 양형기준으로 설정되지 아니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양형기준의 변동에 따라 내용 중 일부가 수정될 여지가 큰 점, 작성에 참여한 통계분석관의 개인적 의견이나 견해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 그 제작의 목적 및 내용상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내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양형위원회의 공정한 양형기준 설정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을 회신
- 제2기 양형기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 제32차 전체 회의에서 수정의결되어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양형기준 설정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함을 회신